
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97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5.

발 의 자 : 김병기 · 강득구 · 강선우
강준현 · 고민정 · 곽상언
권칠승 · 권향엽 · 김교홍
김기표 · 김남근 · 김남희
김동아 · 김문수 · 김민석
김병주 · 김상욱 · 김성환
김성희 · 김승원 · 김영배
김영진 · 김영호 · 김영환
김용만 · 김용민 · 김우영
김원이 · 김 윤 · 김윤덕
김정호 · 김주영 · 김준혁
김태년 · 김태선 · 김한규
김 현 · 김현정 · 남인순
노종면 · 맹성규 · 모경종
문금주 · 문대림 · 문정복
문진석 · 민병덕 · 민형배
민홍철 · 박균택 · 박민규
박범계 · 박상혁 · 박선원
박성준 · 박수현 · 박용갑
박 정 · 박정현 · 박주민
박지원 · 박지혜 · 박찬대
박해철 · 박홍근 · 박홍배

박희승 · 백승아 · 백혜련
복기왕 · 부승찬 · 서미화
서삼석 · 서영교 · 서영석
소병훈 · 손명수 · 송기현
송옥주 · 송재봉 · 신영대
신정훈 · 안규백 · 안도걸
안태준 · 안호영 · 양문석
양부남 · 어기구 · 염태영
오기형 · 오세희 · 위성곤
유동수 · 윤건영 · 윤종균
윤준병 · 윤호중 · 윤후덕
이강일 · 이개호 · 이건태
이광희 · 이기현 · 이병진
이상식 · 이성윤 · 이소영
이수진 · 이언주 · 이연희
이용선 · 이용우 · 이원택
이인영 · 이재강 · 이재관
이재정 · 이정문 · 이정현
이주희 · 이학영 · 이해식
이훈기 · 임미애 · 임오경
임호선 · 장경태 · 장종태
장철민 · 전용기 · 전재수
전진숙 · 전현희 · 정동영
정성호 · 정을호 · 정일영
정준호 · 정진욱 · 정청래
정태호 · 조계원 · 조승래
조인철 · 조정식 · 주철현

진선미 · 진성준 · 차지호
채현일 · 천준호 · 최기상
최민희 · 추미애 · 한민수
한병도 · 한정애 · 한준호
허성무 · 허영 · 허종식
홍기원 · 황명선 · 황정아
황희의원(16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,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296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(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)”를 “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”로, “제1호”를 “제4호 또는 제5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금융위원회”를 각각 “금융감독위원회”로 한다.

4. 기관경고

3.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

5. 기관주의

제1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4조의2(임직원에 대한 제재)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·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

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

1. 해임요구
2.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
3. 문책경고
4. 주의적 경고
5. 주의
6.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

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·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당 보험회사에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보험회사에 요구하게 할 수 있다.

1. 면직
2. 6개월 이내의 정직
3. 감봉
4. 견책
5. 경고

6. 주의

제135조제1항 중 “금융위원회(제134조제1항”을 “금융감독위원회(제134조의2”로, “제1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”를 “제134조의2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34조(보험회사에 대한 제재)		제134조(보험회사에 대한 제재)		
① <u>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(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)가 이</u>		① <u>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</u>		
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·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		-----		
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		-----		
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그 밖의		-----		
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		-----		
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		-----		
는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		-----		
한 법률」 별표 각 호의 어느		-----		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제4호에		-----		
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),		-----		
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		-----		
률」 제51조제1항제4호, 제5호		-----		
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		-----		
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		-----		
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(제4		-----		
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하		-----		
다)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		-----		
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	-----		
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		-----		
독원장으로 하여금 <u>제1호</u> 의 조		----- <u>제4호</u> 또는		
치를 하게 할 수 있다.		<u>제5호</u> -----.		

1.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·경고
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
· 경고·문책의 요구

2. (생략)

3. 임원(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
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
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
한다.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)
의 해임권고·직무정지

<신설>

4. (생략)

<신설>

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
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
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
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~ 7. (생략)

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
의 건의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1
항에 따른 조치, 제2항에 따른
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
받은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할 수
있다.

<삭제>

1. (현행 제2호와 같음)

3.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
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
게시명령

4. 기관경고

2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5. 기관주의

② 금융감독위원회-----
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③ 금융감독위원회-----

-----.

<신 설>

제134조의2(임직원에 대한 제재)

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
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
따른 규정·명령 또는 지시를
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
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, 피
보험자,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
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
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
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
으로 하여금 제4호 또는 제5호
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
있다.

1. 해임요구

2.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

3. 문책경고

4. 주의적 경고

5. 주의

6.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
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
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조치

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
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

	<u>따른 규정·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당 보험회사에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보험회사에 요구하게 할 수 있다.</u> <u>1. 면직</u> <u>2. 6개월 이내의 정직</u> <u>3. 감봉</u> <u>4. 견책</u> <u>5. 경고</u> <u>6. 주의</u>
제135조(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) ① <u>금융위원회</u>(제13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)는 보험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(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	제135조(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) ① <u>금융감독위원회</u>(제134조의2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)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<u>제1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</u>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보험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 ② (생략)	----- ----- ----- <u>제134조의2</u> <u>제1항 및 제2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-